



의장등록된 벽 묘비의 영업비밀성에 근거한 부정 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사건

15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정13년(와) 제20027호
판결 일자	2002. 3. 19.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주식회사 토우겐샤		
피고	도쿄도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 2조 4항, 3조, 4조		
영업 비밀	벽 묘비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의장등록		

02 사건 개요

소송당사자가 아닌 A와 B는 이 사건의 묘비와 관련하여 의장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묘지를 검토하던 중 벽 묘지를 채택하기로 하고, 도쿄도 야바시라 공원묘지 등에서 약 1만개의 벽 묘지를 판매(사용허가)를 하고, 계속 판매중이다.

원고는 묘비를 판매하는 자로서 A와 B로부터 해당 정보와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신탁양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벽 묘비 사용 및 판매행위에 관하여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청구를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벽 묘지에 관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는 벽 묘지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고,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벽면묘지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유효하게 해당 정보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침해행위가 독립한 침해행위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벽 묘지에 관하여,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본 정보는 의장공보에 게재되어 있는 도면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벽 묘비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설치한 벽 묘비의 형태 또한 상이하다.

A와 B로부터 해당 정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본 사안은 금지청구권을 제기할 권리가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또한 불가능하다.

04 판결 요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원고의 도면은 의장등록이 된 것으로서 특허청이 발행하는 의장공보에 게재되어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의장등록 출원 행위는 통상 의장이 등록되고 권리화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출원인이라면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타의 정보가 추가되어 특별히 영업비밀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바,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또한 벽 묘비의 형상이 전혀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피고가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타의 쟁점에 대해 판단할 것도 없이 본건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05 Key Point

영업비밀이 성립하려면 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등의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등록이나 특허 등과 같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지가 필요한 경우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영업비밀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